

영등포구의회  
제161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7. 4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58호로 2011년 6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교육·복지·사람중심의 새영등포」라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과 신설 및 폐지

- 홍보관광과 신설 및 도시디자인과 폐지

### 나. 과 이관

- 문화체육과 : 복지국 ⇒ 행정국
- 기획예산과 : 행정국 ⇒ 재정국
- 전산정보과 : 행정국 ⇒ 재정국
- 환 경 과 : 도시국 ⇒ 복지국
- 부동산정보과 : 재정국 ⇒ 도시국

#### 다. 과 명칭 변경

- 기획홍보과 ⇒ 기획예산과
- 지적과 ⇒ 부동산정보과

#### 라. 과 신설·폐지·이관에 따른 국별 업무 이관

- 제5조(행정국) 제2항 제5호, 제6호, 제15호를 제6조(재정국)으로 이관
- 제6조(재정국) 제2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8조(도시국)으로 이관
- 제7조(복지국) 제2항 제5호를 제6조(재정국)으로 이관
- 제7조(복지국) 제2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조(행정국)으로 이관
- 제8조(도시국) 제2항 제9호, 제10호를 제9조(건설국)으로 이관
- 제8조(도시국) 제2항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7조(복지국)으로 이관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기획 및 재정분야를 강화하고 관광·홍보 기능을 보강하여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은 안 제5조(행정국)에 “홍보관광과”를 신설하고 “문화체육과”를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음.
  - 관광진흥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
  - 문화·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
  - 생활체육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
  -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
- 안 제6조(재정국)에 행정국에 있던 기획홍보과를 “기획예산과”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국으로 이관 하였으며 “전산정보과”도 행정국에서 재정국으로 이관하였음.
  - 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
  -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
  -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
  - 고용안정과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
- 안 제7조(복지국)에 “환경과”를 도시국에서 복지국으로 이관 하였음.

- 대기·수질보전에 관한 사항
  - 소음·진동 대책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  -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
  -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  -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
- 안 제8조(도시국)에 재정국에 있던 지적과를 “부동산정보과”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국으로 이관하였음.
-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
  - 토지관리·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
  -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
  -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- 안 제9조(건설국)에 도시국에 있던 “도시디자인과”의 폐지에 따라 광고물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관됨.
-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
  -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
- 본 개정 조례안으로 2011년 7월 현재 6국(소), 1담당관, 32과, 18동, 188팀이 6국(소), 1담당관, 32과, 18동, 194팀으로 조정되어 6개의 팀이 증가됨.
- 안 부칙에 시행일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.

-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설계와 운영도 이에 맞게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변화관리가 필요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  
- 이에 따라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 및 재정, 관광 및 홍보 분야 등을 강화하여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본 조례개정 전반적인 검토결과,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,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잦은 행정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구민들의 혼돈이 우려되며 국간 업무 조정에 따른 일부 과의 소속국 변경이 해당 국 고유의 업무영역에 적합한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##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